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회계·세무 자문용역 공고

공공연구성과의 활용·확산 촉진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회계·세무 자문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3월 00일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 김 봉 수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○ 입찰명: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회계·세무 자문용역

○ 계약기간: 계약체결일 ~ 2026. 04. 30 (36개월 이내)

○ 사업예산 : 일금이천만원정(₩20,000,000 / 부가세 포함)

* 월 단위로 분할하여 3년 간 대금 지급(협의), 단 연말정산, 법인세 수수료는 별도

○ 제안서 제출기간

- 사전규격 : 2023.03.21.(화) ~ 2023.03.23.(목)까지
- 공고기간 : 2023.03.24.(금) ~ 2023.04.05.(수)까지
- 접수기한 : 2023.04.05.(수), 12:00까지 (도착분에 한함)

○ 제안서 제출 방법 : 우편접수

○ 접수처 : (07551)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20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경영지원실 김현철 선임연구원

※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,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문의처

구 분	연락처
사업담당자	○ 경영지원실 조진호 선임 : (02)736-9837 / jjh0413@compa.re.kr
접수담당자	○ 경영지원실 김현철 선임 : (02)736-9284 / khc6273@compa.re.kr

2. 입찰 관련 사항

○ 입찰방법: 제한경쟁입찰

○ 사업설명회: 제안요청서로 갈음함

○ 낙찰자 결정방법: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제43조

○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/1000*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

※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(2020.12.28.)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로 함

3. 입찰참가 자격

○ **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**

-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(나라장터 업종코드: 3601) 이거나 회계법인(나라장터 업종코드: 1200)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사무소(나라장터 업종코드: 3723) 이거나 세무법인(나라장터 업종코드: 3724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,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'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'를 소지한 자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

○ **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**

4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

○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(수행책임자)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

○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

○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, 입찰 참가 제외, 낙찰 취소,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

○ 제안요청서,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계약사무지침,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

○ 관계법령 등의 숙지(근거: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)
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,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